

(공시보고서 표지 - 공통)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1 년 5 월 4 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노아투자일임주식회사
(영문명) Noah Investment Managemet Co., Ltd
(홈페이지) <http://www.noaham.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6, 102 동 1903 호
(전 화) 070-7777-3225

대 표 이 사 : 손 종 현

담 당 책임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손 종 현 (전 화) 070-7777-3225

작 성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손 종 현 (전 화) 070-7777-3225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59 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3 항, 동법 시행령 제 36 조제 2 항제 1 호바목, 같은 항 제 2 호다목, 같은 항 제 3 호다목 및 같은 항 제 4 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59 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49 조제 1 항제 15 호에 의거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1-11-1 호)

정기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2021.05.28 (금) 10:00	
2. 장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6, 102 동 1903 호 당사 회의실	
3. 의안 주요내용	1.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의 건 2. 재무제표의 승인의 건 3. 임원 보수 한도 결정의 건	
4.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2021.05.03 (월) 10:00	
-사외이사	참석(명)	-
참석여부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없음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사업목적 추가			
2.사업목적 삭제			
3.사업목적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1)	1)	

<기재상의 주의>

- 주 1) 상법, 정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한 때 신고한다.
- 주 2) “의안 주요내용”은 의안 안전별로 요약하여 주요내용을 기재하되, 사업목적변경, 이사·사외이사의 선임, 감사(감사위원회 위원포함)선임, 집중투표제 도입·폐지안건은 해당 세부내역서식에 따라 별도로 기재한다.
- 주 3) 임원선임의 경우 “의안 주요내용”에 “상근이사 ○명, 비상근이사 ○명, 사외이사 ○명, 감사위원 ○명, 감사 ○명 선임” 등의 방식으로 임원 선임의 내용을 기재하고, 임원해임의 경우 “의안 주요내용”에 해임임원별로 각각 해임사유,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주 4)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은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란에 기재한다.
- 주 5) “신규선임여부”는 “신규선임” 또는 “재선임”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주 6) “주요경력”은 선임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주요경력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주 7) “현직”은 신고일 현재 당해임원의 소속기관명 및 직책을 기재하되, 다른 상장법인의 임원(상근·비상근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감사)인 경우에는 그 임기를 함께 기재하며, 임원선임 이후 퇴임여부·시기 등을 함께 기재한다.
- 주 8)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의 “사외이사 여부”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주 9) 【감사선임 세부내역】의 “상근여부”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주 10) 【집중투표제 도입·배제 세부내역】은 도입하는 경우 “변경 전”에 “배제”, “변경 후”에 “적용”을 기재하고, 폐지하는 경우 그 반대로 기재한다.
- 주 11) 상기 기재사항 외의 외부감사인 변경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 주 12)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 당해 사업연도 중에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자산총액 대비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비중을 기재한다)